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단506261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 2015. 8. 20. (피고 1 내지 4에 대하여)

2016. 1. 14. (피고 5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6. 2. 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62,161,120원과 그중 138,621,049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그중 23,365,643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66,011,418원과 그중 65,837,616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피고 D는 94,0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66,011,418원과 그중 65,837,616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각 2015. 5. 7.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피고 E 사이에 2014. 11.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39,912,2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피고 E는 원고에게 39,912,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62,161,120원과 그중 138,621,049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그중 23,365,643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 나. 피고 C, D는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피고 D는 94,000,000원을 한도로 위 가.항 기재 돈 중 66,011,418원과 그중 65,837,616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D와 피고 E 사이에 2014. 11.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E는 피고 D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4. 11. 13. 접수 제80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구상금 청구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B, D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갑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 B, C, D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가. 기초 사실

(1) 피고 D와 피고 E는 1993년 5월경 혼인하여 자녀로 F생 딸과 G생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자녀들의 양육 및 친권은 E가 책임진다.

2. D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갈음하여 D 소유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E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단 이혼 확정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 동안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2) 피고 D는 2014. 11. 13.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3) 피고 D와 피고 E는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미성년자녀인 H에 대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피고 E를 정하며, 피고 D가 피고 E에게 양육비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고, 2015. 5. 2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4)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예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015년 4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325,000,000원 정도이다.

[인정 근거] 갑10호증, 을2 내지 4호증, 을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통정허위표시로서 사해행위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1.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관리정보등록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부실처리 및 채권보전조치에 대해 알려 주었다. 피고 D는 원고에게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보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D와 피고 E는 2014. 11. 12.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3일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속여 가압류 집행을 보류한 것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갑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피고 D, E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재산분할 등으로서 사해행위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E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초과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취소 대상 행위 갑3호증의 2, 갑4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D는 2012. 4. 1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10. 21. 기한이익 상실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2014. 12. 30.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 기초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E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봄이 적절하다.

(3)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에 관한 적용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4) 피고 D, E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와 피고 E의 재산분할 대상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 피고 D의 적극 재산 : 시가 약 325,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 피고 D의 소극 재산 : 농협에 대한 신용대출 4,550,000원, 우리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213,000,000원, 지급보증 담보대출 3,182,000원, 상호저축은행 신용대출 5,000,000원, 우리카드 대출 2,714,000원 합계 228,446,000원
- 피고 E의 적극 재산 : 0원
- 피고 E의 소극 재산 : 채무 15,000,000원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인 점, 원고와의 연대보증약정 당시인 2012. 4. 12.경에는 이미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피고 회사와 무관한 별도의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 E는 피고 D의 적극재산으로 승용차, 보험환급금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E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가액은 81,554,000원(325,000,000원 - 228,446,000원 - 15,000,000원)이다.

(5) 상당한 범위 초과 여부 갑8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3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을8호증, 을10호증, 을12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의 어머니인 I는 피고 E에게 1997. 2. 10. 500,000원, 1997. 8. 25. 3,500,000원, 1997. 9. 29. 20,000,000원, 1997. 10. 7.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에게 2010. 6. 15.과 2010. 8. 4. 합계 10,000,000원, 2011. 4. 9.부터 2011. 6. 20.까지 합계 2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E에게 2012. 7. 30.과 2012. 8. 2.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 D, E의 생활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보태어 준 사실, I는 2012. 1. 31. 피고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101,975,495원을 변제하여 준 사실, 피고 D는 피고 E에게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피고 D, E의 혼인 기간, 이혼 이후 피고 E가 자녀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기로 한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 E가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81,554,000원 중 70%인 57,087,800원 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E는 재산분할로 시가 325,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우리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약 213,000,000원과 자신 명의의 채무 15,000,000원을 부담함으로써 순재산 97,000,000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E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순재산 97,000,000원 중 재산분할로 상당한 57,087,800원을 넘는

39,912,200원 부분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D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 E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라.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재산분할로 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재산분할로 상당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39,912,2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9,912,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원정숙

별지